

2021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모집요강



강남대학교

창학이념

본교는 기독교 정신과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민족과 인류를 위하여 진리·자유·평등·평화·복지를 추구하며 경천애인을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교훈

敬 天 愛 人

교육목적

본교는 창학이념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인격을 연마하여 민족과 인류의 번영을 위하여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교육목표

- 교양인 양성
- 전문인 양성
- 봉사인 양성



CONTENTS

1. 모집단위 및 인원	4
2. 전형일정	5
3. 원서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5
4. 지원자격	8
5. 전형방법	15
6. 고사안내	15
7. 제출서류	16
8. 합격자발표 및 등록·환불 안내	20
9. 그 밖에 수험생 유의사항	21
10. 각종 양식	22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

모집단위			입학정원	모집인원	
대학	학과(부)	세부전공			
주간	복지융합대학	사회복지학부	사회사업학, 사회서비스정책학	90	25
		실버산업학과		59	
	경영관리대학	글로벌경영학부	경영학, 국제통상학	125	
		정경학부	경제금융, 세무학, 공공인재학	143	
		융합자율전공학부		30	
	글로벌인재대학	기독교학과		20	
		글로벌문화학부	한영문화콘텐츠, 국제지역학, 중국지역학	154	
	ICT건설공과대학	ICT공학부	소프트웨어, 가상현실, IoT전자공학, 산업경영공학, 데이터사이언스	247	
부동산건설학부		부동산학, 도시공학, 건축공학	125		
야간	복지융합대학	사회복지학부(야)	사회사업학	52	4
	경영관리대학	경영관리자율전공학부(야)	경영학 경제금융 세무학 공공인재학	171	
주간	복지융합대학	예체능학부	음악학(피아노, 성악, 관현악)	39	미선발
			유니버설아트디자인	67	
			스포츠복지	45	
	사범대학	교육학과		37	
		유아교육과		47	
		초등특수교육과		20	
		중등특수교육과		20	
합 계			1,491	29	

- ※ ① 모집인원은 전체 입학정원의 2%,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모집함
 ② 전 교육과정 이수자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은 정원 제한 없이 모집함
 ③ 상기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은 2021학년도 본 대학 학사구조 조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음

2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원서접수	2020.07.20.(월) 10:00 ~07.24.(금) 17:00까지	본교 홈페이지		
서류제출	2020.07.30.(목) 17:00까지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단 자기소개서 입력은 07.24.(금) 17:00까 지 원서접수사이트 에서 입력마감 · 기일엄수	
면접고사	2020.08.29.(토)	본교 지정장소(홈페이지 게시)		
합격자 발표	2020.12.24.(목)	본교 홈페이지 게시		
문서등록 기간	2020.12.28.(월) ~ 12.30.(수)	본교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등록	· 본교 입학처 홈페 이지 합격자 조회 후 안내에 따라 문서 등록(서류를 통한 등록여부 확정 의사표현)-문서등록 을 하지 않으면 합 격을 취소함 · 등록기간 중 미등 록자는 합격을 취 소함	
추가 합격자	발표	2020.12.30.(수) ~ 2021.01.04.(월) 21시까지		본교 홈페이지 게시(3~4차는 추가 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보)
	등록	2021.01.05.(화)까지		본교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등록
최종등록금 납부기간	2021.02.08.(월) ~ 02.10.(수)	본교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등록		

3 원서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 및 전형료

구 분	접수기간	전형료
전 모집단위	2020.07.20.(월) ~ 07.24.(금)	100,000원

가. 전형료 반환

- 1) 원서접수를 완료한 뒤에는 접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음
- 2) 대학의 귀책이나 천재지변, 질병이나 사고(증빙서류 제출자)로 인하여 자체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함
- 3) 자체고사 불참자(결시)의 자체고사료는 환불하지 않음

나. 전형료 비례 환불

- 1)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임
- 2)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
 - 반환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 본교 직접 방문
- 3)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함. 또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2. 원서접수 절차

인터넷 원서접수 시 사진 업로드를 위하여 지원자 본인의 증명사진 파일(jpg, gif 파일형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6개월 내 사진으로 인물 뒤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은 사용 불가함]

원서접수사이트 접속 | 본교 홈페이지(www.kangnam.ac.kr) 접속
→ 입학원서 접수 대행기관(www.uwayapply.com) 접속



대입 표준 공통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반드시 본인 명의로 회원 가입해야 함(부모 및 타인 아이디로 원서접수 불가)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 |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접수관련 동의서 확인 후 진행



인터넷 입학원서 작성 | 공통원서 및 본교 추가 원서



원서 입력사항 확인 | 전형료 납부 전 반드시 최종 작성 내용을 확인해야 함. 전형료 납부 후에는 전형유형 및 모집 단위를 변경하거나(기재사항 수정 불가)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음



전형료 결제 | 무통장입금, 신용카드결제, 휴대폰결제 등을 통하여 전형료 납부
전형료 납부 후에는 원서접수 취소 및 전형료 환불 불가



수험표 출력 | 접수완료 확인 후 수험표 출력(본인 보관용, 면접/실기고사 시 지참)



서류제출 송부(해당자)

- 제출기한 : 2020.07.30.(목) 17:00까지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발송용 봉투 표지(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 로그인 후 출력 가능)를 대
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발송
- 제출주소 : (우)1697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40 본교 본관 110호 입학전형
관리팀

1. 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
하므로 방문접수는 시행하
지 않습니다.
2. 본 대학에 원서를 접수하
면 수능성적 자료 온라인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것으
로 간주합니다.
3. 모집요강이 필요한 경우
본 대학 홈페이지에서
Download 받아 사용하기
바랍니다.

※ 본 대학교는 원서접수 대행
기관을 통해 원서접수를 위탁 처
리하고, 수집한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계좌
번호 등)를 입학전형 목적 이외
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최종합격자의 개인정보는
본 대학교의 학적부 생성, 학생
증 발급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하므로 원서접수 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지원자의 동
의가 필요합니다.

※ 원서접수 문의 : (주)uwayapply (1588-8988)

3.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가. 복수지원 금지

- 1) 전형기간이 같아도 수시(재외국민 포함)모집을 시행하는 대학 간에는 6개 전형 안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함, 단,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한 없이 복수지원이 가능함
※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전형은 모두 접수취소 처리 됨
- 2) 수시(재외국민 포함)모집 최종 합격자(등록 뒤 환불자와 총원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학(전문대학, 산업대학 포함)의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 됨

나. 이중등록 금지

- 1) 수시(재외국민 포함)모집 합격자가 총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총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학등록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함
- 2) 입학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 하나의 대학을 선택해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됨
- 3) 합격취소와 등록금 환불 요청은 본교 홈페이지(www.kangnam.ac.kr)에서 신청 가능

다. 그 밖에 유의사항

- 1)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함 (창구 접수 없음)
- 2)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의 작성 오류,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 3) 원서의 모든 기재정보는 제출 서류와 일치하여야 함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연락처 변경 등 원서접수 사항과 학생부의 자료가 상이한 경우 본교 입학전형관리팀(031-280-3851~6)으로 연락하여 수정 요청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본인 기준 주민등록초본 제출
- 4) 전형료 결제(입금) 뒤에는 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작성해야 함
- 5) 입학원서에 지원자와 부모의 국내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합격자 발표 시 연락두절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6) 면접고사 결시자 및 서류 미제출자는 사정대상에서 제외 됨
- 7) 입학원서 접수 후 해당 전형유형별 지원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자격미달로 불합격 처리하고, 추후에 발견될 경우에도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 8) 면접고사 부정행위자나 대리응시가 확인 될 경우 입학이 취소 됨
- 9)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4 지원자격

1.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

가. 공통사항

- 1) 12년(24학기) 이상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소지한 자
- 2) 고교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 중 3개 학년 이상 해외에서 수료해야 함
- 3) 학력요건, 해외재학기간 및 해외 체류일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4) 자격심사 시 불법·탈법적인 방법으로 거주(영주), 체류하거나 기타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자격 기준

자격구분		자격기준
영주교포 자녀		- 부모, 학생 모두 외국에서 해외재학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영주한 교포 자녀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재직증명서 필수 제출
해외 근무자 자녀	해외 근무 공무원 자녀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해외 상사직원 자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관리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해외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해외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설치인증·허가 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 의사, 언론기관의 특파원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외국에서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자
기타 재외국민자녀		- 부모와 학생 모두 합법적으로 외국에서 해외재학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거주하거나 거주하고 귀국한 자녀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① 현지 자영업자 ② 현지법인 ③ 해외파견 교직원 ④ 해외 선교활동
※ 해외 근무자의 근무형태는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한함(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 교육부인가 재외한국국제학교 교원의 경우 해외파견 교직원 자격에 해당함		

다. 자격기준 요약

자격기준	세부내용
학력요건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1개 학기 결손까지 인정 가능 (23학기, 총 11년 6개월 이상)
해외 재학기간	고교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3년 이상
해외 체류일수	학생 : 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해외 체류 부모 : 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해외 체류
해외 재직기간	역년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사업/영업

라. 자격기준 세부

자격기준	세부내용
해외근무자의 정의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 또는 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해외근무자 자녀의 정의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재학기간의 정의	부모의 해외근무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해야 함(비연속 인정)
해외 체류일수 조건	해외재학기간 3년에 해당하는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1) 부모 해외근무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해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체류해야 함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해외상사의 경우 해외파견 발령기간 기준, 현지취업자의 경우 입사일~퇴사일 기준)
- 해외재학기간과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해외 체류일수 요건을 충족하는 전제 하에 인정

2) 학생 학력요건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이 경우 공식적으로 발급된 월반 또는 조기졸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국내고교 및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출신자의 경우에도 총 재학기간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함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3) 학생의 해외재학기간

- 부모의 해외근무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학년 이상 수료해야 함(비연속 인정)
-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만 인정(제 3국 수학 미인정)
-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해외 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 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사이버·통신교육 과정에서의 수학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국내 이수학과와 외국 이수학기가 중복된 경우 외국학기를 우선 인정함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예시) 학사일정 : G8(17.8.1.~18.6.23), G9(18.8.1.~19.6.23.), G10(19.8.1.~20.6.23.)
 재학기간 : G8(17.9.1.~18.6.23), G9(18.8.1.~19.6.23.), G10(19.8.1.~20.6.23.)
 → G8 도중 편입으로 인해 재학기간이 1개월 부족하므로, G11 1개월 추가 재학 필요
 G8(17.9.1.~18.6.23), G9(18.8.1.~19.6.23.), G10(19.8.1.~20.6.23.), G11(20.8.1.~8.31.)

4) 학생 및 부모의 해외체류일수

- 해외재학기간에 해당하는 3개년도(6개 학기)에 대하여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부모는 2/3 이상을 해당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 및 부모의 체류일수 산정 시에는 학생의 해외재학기간과 부모의 해외근무기간에 모두 해당하는 기간에 한하여 체류일수로 인정함
- 학생이 실제 재학 및 체류 중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파견(해외근무)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학생과 부모 모두 해외 체류일수로 인정하지 않음(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구 분	기 간
해외체류일수 산정기준	해외재학기간에 해당하는 학사일정
부모 해외근무기간	해외파견 시작일 ~ 파견 종료일
학생 해외재학기간	해외학교 전입일(편입일) ~ 전출일(졸업일)
해외체류일수 인정 기준	체류일수 인정 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에는 방학 및 휴일 등에 무관하게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해외 체류일수 산정기준 사례>

CASE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일정 : G9(17.3.2.~12.30.), G10(18.3.4.~12.31.), G11(19.2.28.~12.27.) ■ 재학기간 : G9~G11(17.3.2.~20.3.1) ■ 체류일수 산정 : 다음의 각 기간에 대하여 부모는 2/3 이상, 지원자는 3/4 이상 해외 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1 : 2017.03.02. ~ 2018.03.01. (365일 기준, 부모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2 : 2018.03.02. ~ 2019.03.01. (365일 기준, 부모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3 : 2019.03.02. ~ 2020.03.01. (366일 기준, 부모 244일 이상 / 지원자 274일 이상 체류) 				
CASE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일정 : G9(17.3.2.~12.30.), G10(18.3.4.~12.31.), G11(19.2.28.~12.27.), G12(20.3.2.~12.30.) ■ 재학기간 : G9 도중 편입, G9~G11+G12(17.4.2.~20.4.2.) ■ 체류일수 산정 : I, II 중 지원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산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I</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1 : 17.4.2.~18.4.1. (365일 기준, 부모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2 : 18.4.2.~19.4.1. (365일 기준, 부모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3 : 19.4.2.~20.4.1. (366일 기준, 부모 244일 이상 / 지원자 274일 이상 체류)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II</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1 : 17.4.2.~18.3.1.+ 20.3.2.~4.1. (365일 기준, 부모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2 : 18.3.2.~19.3.1. (365일 기준, 부모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3 : 19.3.2.~20.3.1. (366일 기준, 부모 244일 이상 / 지원자 274일 이상 체류) </td> </tr> </table>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1 : 17.4.2.~18.4.1. (365일 기준, 부모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2 : 18.4.2.~19.4.1. (365일 기준, 부모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3 : 19.4.2.~20.4.1. (366일 기준, 부모 244일 이상 / 지원자 274일 이상 체류)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1 : 17.4.2.~18.3.1.+ 20.3.2.~4.1. (365일 기준, 부모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2 : 18.3.2.~19.3.1. (365일 기준, 부모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3 : 19.3.2.~20.3.1. (366일 기준, 부모 244일 이상 / 지원자 274일 이상 체류)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1 : 17.4.2.~18.4.1. (365일 기준, 부모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2 : 18.4.2.~19.4.1. (365일 기준, 부모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3 : 19.4.2.~20.4.1. (366일 기준, 부모 244일 이상 / 지원자 274일 이상 체류)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1 : 17.4.2.~18.3.1.+ 20.3.2.~4.1. (365일 기준, 부모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2 : 18.3.2.~19.3.1. (365일 기준, 부모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3 : 19.3.2.~20.3.1. (366일 기준, 부모 244일 이상 / 지원자 274일 이상 체류) 				

<학력요건 및 해외재학기간 관련 자격 충족·미충족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 : 국내 이수학기 / A : 해외 이수학기 • 학력요건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 (학제차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1개 학기 결손 인정 가능) • 해외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 (비연속 가능) 																																
Case	학년 학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인정 여부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재학기간														D	D	D	D	D	D	누락						불인정					
2	재학기간	A	A	A	A	A	A	A	A	A	A	A	A	A	D	D	D	D	D	D	인정						불인정					
3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D	D	인정			
4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불인정	
5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누락	A	A	A	A	A						인정
6	재학기간	D	D	D	누락						D	D	D	D	D	D	D	D	D	D	인정											불인정
7	재학기간	D	D	D	D	인정					D	D	D	D	D	D	D	D	D	D		D	D	D	누락							인정

Case	자격충족 여부	상황	학력요건, 해외재학기간 기준
1	미충족	해외재학기간(6학기) 1개 학기 부족	학력요건 - 전·편입과정에서의 1개 학기가 부족한 경우(총 재학 학기 23학기)로 충족 해외재학 - 총 5학기로 1개 학기 부족 (자격미달)
2	미충족	해외재학기간(6학기) 1개 학기 부족	학력요건 - 중복 재학학기(6-2)로 누락학기(10-1) 인정, 총 24학기 충족 해외재학 - 총 5학기로 1개 학기 부족 (자격미달)
3	충족	해외재학기간(6학기) 비연속	학력요건 - 중복 재학학기(8-1, 8-2, 10-1)를 중복 산정하지 않더라도 총 재학학기 24학기를 충족 해외재학 - 중·고등학교 기간 중 외국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1개 학년을 포함한 비연속 6개 학기(8-1, 8-2, 10-1~11-2)를 이수하여 기준 충족
4	미충족	해외재학기간(6학기) 중 고등학교 1년 미포함	학력요건 - 총 24학기 충족 해외재학 - 6개 학기 중 고등학교교정이 1개 학기만 포함되어 해외재학기간 기준 미달
5	충족	학력요건(24학기) 중 1개 학기 부족	학력요건 - 전·편입과정에서의 1개 학기가 부족한 경우(총 재학학기 23학기)로 만족 해외재학 - 6개 학기(10-1~12-2) 만족
6	미충족	중복학기로 누락학기 대체 인정	학력요건 - 총 재학 학기 21학기. 중복 학기(5-1, 5-2)는 누락 1개 학기로 대체 인정 가능함. (2개 이상 연속된 중복이수학기라도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인정함 - 전·편입에 의한 1개 학기 부족을 인정하더라도 22학기로 부족(자격미달) 해외재학 - 6개 학기(10-1~12-2) 만족
7	충족	중복학기로 복수의 누락학기 대체 인정	학력요건 - 총 재학 학기 21학기. 중복 학기(2-2)는 누락 학기(4-2)로, 중복 학기(6-2~7-1)은 누락 학기 (9-1)로 대체 인정 가능함. 전·편입에 의한 1개 학기 부족을 인정하여 총 23학기로 자격 인정 해외재학 - 비연속 6개 학기 (7-1~8-2, 11-2~12-2) 만족

2. 전 교육과정 이수

가. 공통사항

- 1) 12년(24학기) 이상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2) 국내 학교 재학여부와 무관함
- 3) 해당 국가의 방학, 휴일 등에 의해 국내에 임시 체류한 기간이 있더라도 지원 가능
- 4)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해외 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5)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 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사이버·통신교육 과정에서의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6) 자격심사 시 불법·탈법적인 방법으로 거주(영주), 체류하거나 기타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지원자격 구분

자격구분	자격기준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참고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	-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	1.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 및 중점관리 5개국 국민(아래 중 택1) 1) 한국어 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자 2)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2 이상	2.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TOPIK 4급을 취득하여야 졸업가능
전교육과정 이수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국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2.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 및 중점관리 5개국 외 외국인(아래 중 택1) 1) 공인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2) 본교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자 3) 타 4년제 대학 어학교육원 취득등급이 본교 한국어능력시험 3급에 준하는 자	

※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 및 중점관리 5개국

- 고시 21개국 :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 유학생 중점관리 국가 : 기니, 말리,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메룬

다. 자격기준 세부

- 1)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자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2)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

3. 북한이탈주민

가. 공통사항

- 1) 12년(24학기) 이상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3)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단,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나. 자격기준 세부

- 1) 학력요건 : 한국에서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12년 이상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은 자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별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심의 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5 전형방법

1. 전형방법

전형유형	전형요소		총점
	1단계	2단계	
· 전 모집 전형	서류심사 (자격요건)	면접고사 (100점)	100점

2. 합격자의 결정

- 가. 서류심사(자격요건)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고사 총점 100점 순위에 의하여 선발
- 나. 선발인원은 전체 입학정원의 2%,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
- 다. 북한이탈주민과 전 교육과정 이수자는 정원 제한 없이 선발
- 라. 면접고사 기준점수 미달자의 경우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마. 면접고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3. 동점자 처리기준 : 외국소재 고등학교 재학기간 → 외국소재 학교 전체 재학기간

6 고사안내

1. 면접고사

- 가. 일 시 : 2020.08.29.(토) 시간은 추후 공지
- 나. 장 소 : 추후 공지
- 다.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발급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라. 블라인드 면접 실시
 - 1) 임의의 가번호 순서에 따라 면접고사 진행
 - 2) 면접 중 지원자의 ① 출신고교, 수험번호, 성명 등 언급 ② 부모의 직업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언급 시 해당 발언을 한 지원자는 1차 구두 경고 후 반복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처리
 - 3) 주요내용 - ※면접고사 결시자는 사정대상에서 제외함

구분	구술면접(10분 이내)				합계
	본교 지원동기	학업계획	학업능력	인성	
배점	25	25	25	25	100점

7

제출서류

1.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

No	제출서류	영주교포 자녀	해외근무자자녀			유치 과학자 및 교수 자녀	기타재외국민자녀				비 고
			해외근무 공무원	해외상사 직원	외국정부 국제기구 근무자		현지 자영업자	해외 현지법인 근무자	해외파견 교직원	해외 선교사	
1	입학원서	○	○	○	○	○	○	○	○	○	인터넷 접수
2	자기소개서	○	○	○	○	○	○	○	○	○	원서접수 사이트 입력 (마감기한 엄수) 출력물 제출 불필요
3	재외국민특별전형 서류심사 신청서	○	○	○	○	○	○	○	○	○	본교소정양식으로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접수완료 후 출력하여 직접 작성, 제출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	○	○	○	○	○	외국학교의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5	초·중·고 재학증명서(학생부)	○	○	○	○	○	○	○	○	○	
6	초·중·고 성적증명서(학생부)	○	○	○	○	○	○	○	○	○	
7	가족관계증명서 ※ 학생 1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	○	○	○	○	○	○	○	○	총 2부 (학생 1부, 부/모 1부)
8	출입국사실증명서 ※ 부, 모, 학생 각 1부	○	○	○	○	○	○	○	○	○	발행처 - 정부24(인터넷) - 주민센터
9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 부, 모, 학생 각 1부	○	○	○	○	○	○	○	○	○	본교소정양식으로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접수완료 후 출력하여 직접 작성, 제출
10	여권 사본 ※ 부, 모, 학생 각 1부	○	○	○	○	○	○	○	○	○	
1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거주사실증명서) ※ 부, 모, 학생 각 1부	○	○	○	○	○	○	○	○	○	발행처 - 영사24(인터넷) - 해외주재영사관 - 외교부 별관(종로구)
12	재직증명서	○ (보호자)	○ (보호자)	○ (보호자)	○ (보호자)	○ (보호자)		○ (보호자)	○ (보호자)	○ (보호자)	외국근무장소 및 기간 명시
13	해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현지 법인 등기부등본						○	○			
14	현지 법인 법인세 납부이력*							○			
15	학생 재학기간에 해당하는 해외 세금납입증명						○				
16	해당기관장의 초청서					○					
17	파송선교사확인서									○	
18	영주권사본 ※ 부, 모, 학생 각 1부	○									영주권 취득일 명기

- ◆ 회사 대외비 또는 해당 국가의 세법상 금지사항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세 납부이력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외 세금납입증명(소득세 납부기록)으로 대체 가능함
-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재외국민특별전형 서류심사 신청서,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은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접수완료 후 출력하여 작성, 본인 서명 후 제출 (작성 및 출력은 PC로 가능하나,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 제출 서류는 원서접수 개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원칙으로 하되(2020.04.20.(월) 이후 발급), 재발급/추가발급이 불가능한 해외 발급 서류에 한하여 해당 기간 이전 발급 서류 제출 가능
- 원서접수 당시 자격요건 충족 예정자로서 지원한 최종합격자는 **2021.02.25.(목)까지** 자격요건의 최종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합격 또는 입학은 취소할 수 있음
- ※ 예시
 - 2020년 2학기 재외 한국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원한 최종 합격자로, 10학년 1학기 ~12학년 2학기 재외국민(2%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원서접수 시점(7월)에 제출한 자격 관련 서류 상 12학년 2학기의 해외근무기간, 해외체류기간, 해외재학기간 및 학력요건에 대한 최종 증명이 불가능함
 - 이에 따라, 합격 및 등록 후 2021.02.25.(목)까지 최종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해외근무기간 확인 : 보호자의 재직증명서 제출
 - 해외체류기간 확인 : 지원자, 부, 모의 출입국사실확인서 제출
 - 해외재학기간 및 학력요건 확인 : 지원자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가능)
- 원서접수 당시 해외 학교 졸업예정자인 최종합격자는 **2021.02.25.(목)까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는 미인정), 고등학교 성적증명서(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포함)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합격 또는 입학은 취소할 수 있음
- 해외 발급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재외한국학교(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16개국 34개 학교, 2019.04.기준)에서 발급한 서류는 학교장 확인(직인)이 있을 경우 영사확인(아포스티유 포함) 없이 제출 가능함
- 영어를 제외한 모든 외국어 서류는 영어 혹은 한국어로 번역공증을 받아야함
- 부모의 이혼, 사망, 동거 및 기타 특이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증빙서류를 제출
-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또는 발급기관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은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방문 제출 서류에 한하여 본교에서 원본 대조 후 사본으로 제출 가능함
- 제출 서류는 합/불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음

2. 전교육과정 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

No	제출서류 (대체가능서류)	전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 주민	비 고
		재외국민	외국인	결혼이주민		
1	입학원서	○	○	○	○	인터넷 접수
2	자기소개서	○	○	○	○	원서접수 사이트 입력(마감기한 엄수) 출력물 제출 불필요
3	재외국민특별전형 서류심사 신청서	○	○	○		본교소정양식으로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접수완료 후 출력하여 직접 작성, 제출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제출
5	초·중·고 재학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	○	○		
6	초·중·고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	○	○		
7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	국내 학교 재학이력이 있는 경우 제출
8	여권 사본	○	○	○		
9	출입국사실증명서	○	○	○		발행처 - 정부24(인터넷) - 주민센터
10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	○	○		본교소정양식으로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접수완료 후 출력하여 직접 작성, 제출
1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거주사실증명서)	○				발행처 - 영사24(인터넷) - 해외주재영사관 - 외교부 별관(종로구)
12	외국국적 증명서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등)		○	○		
13	외국인등록증		○	○		국적취득일 명기
14	혼인관계증명서			○		
15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성적증명서		○	○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 및 중점관리 5개국 해당 자만 제출(2개 중 택 1)
16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이상 성적증명서		○	○		
17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증명서		○	○		
18	본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성적증명서		○	○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 및 중점관리 5개국 외 외국인 해당 자만 제출(3개 중 택 1)
19	타 4년제 대학 어학교육원 취득등급이 본교 한국어능력시험 3급에 준하는 성적증명서		○	○		
20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21	북한이탈주민 학력 확인서 (검정고시 합격증 및 성적표 등)				○	관련 법령에 의해 12년 이상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 서류 (해당자에 한함)
22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미제출 시에도 지원은 가능하나, 새터민장학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재외국민특별전형 서류심사 신청서,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은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접수완료 후 출력하여 작성, 본인 서명 후 제출 (작성 및 출력은 PC로 가능하나,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 제출 서류는 원서접수 개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원칙으로 하되(2020.04.20.(월) 이후 발급된 서류), 재발급/추가발급이 불가능한 해외 발급 서류에 한하여 해당 기간 이전 발급 서류 제출 가능
- 원서접수 당시 해외 학교 졸업예정자인 최종합격자는 **2021.02.25.(목)까지** 외국에서 발행된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는 미인정), 성적증명서(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포함)를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합격 또는 입학은 취소할 수 있음)
-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재외한국학교(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16개국 34개 학교, 2019.04.기준)에서 발급한 서류는 학교장 확인(직인)이 있을 경우 영사확인(아포스티유 포함) 없이 제출 가능함
- 영어를 제외한 모든 외국어 서류는 영어 혹은 한국어로 번역공증을 받아야함
- 부모의 이혼, 사망, 동거 및 기타 특이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증빙서류를 제출
-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또는 발급기관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은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방문 제출 서류에 한하여 본교에서 원본 대조 후 사본으로 제출 가능함
- 제출 서류는 합/불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음

8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1. 합격자 발표 및 문서등록

가. 최초합격자 발표 및 문서 등록

구분	일자	장소	참고
합격자 발표	2020.12.24.(목)	본교 홈페이지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합격자 조회 후 안내에 따라 문서등록(서류를 통한 등록여부 확정 의사표현)-문서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함 · 등록기간 중 미등록자는 합격을 취소함
문서등록 기간	2020.12.28.(월)~12.30.(수)	별도 알림에 따라 등록	

나. 추가합격자 발표 및 문서 등록

구분	일자	장소	참고
합격자 발표	2020.12.30.(수)~2021.01.04.(월) 21시까지	본교 홈페이지 게시(3~4차 추가 합격자 발표 시 개별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합격자 조회 후 안내에 따라 문서등록(서류를 통한 등록여부 확정 의사표현)-문서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함 · 등록기간 중 미등록자는 합격을 취소함
문서등록 기간	2020.12.31.(목)~2021.01.05.(화)	본교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등록	

다. 최종 등록금 납부기간 : 2021.02.08.(월) ~ 02.10.(수)

라. 합격자 발표 시 유의사항

- 1) 문서등록 취소 : 문서등록한 자가 다른 대학에 충원/합격하여 해당 대학에 등록하려 할 경우에는 미등록 충원 등록마감일까지 문서등록을 취소해야 함
(문서등록 취소기간 : 2021.01.04.(월) ~ 01.05.(화))
- 2) 문서등록 취소 신청 : 본교 입학홈페이지에서 문서등록 취소방법 안내에 따라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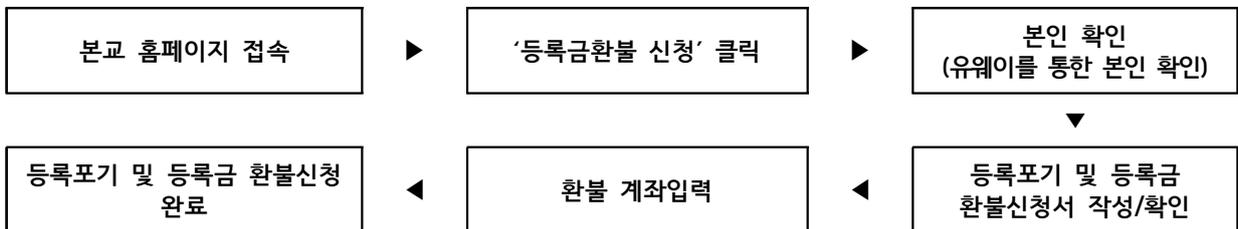
2. 등록 포기 및 환불

가. 등록금 환불 : 본교에 합격하여 등록하였으나 등록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기간 안에 **등록 포기와 환불신청**을 해야 납입한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음

나. 등록금 환불 신청기한 : 2021년 02월 08일 ~ 02월 19일까지

다. 이후에는 교육부 반환기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환불함

마. 환불신청절차 :



바. 유의사항

- 1) 환불신청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에 유의하고 확인서를 출력하여 잘 보관함
- 2) 당일 17시 이전 환불신청은 다음날에 처리되며, 금요일 12시부터 일요일까지의 신청자는 월요일에 환불처리 됨
- 3) 환불완료에 대한 확인은 등록확인 절차와 같음

1. 수험표과 신분증은 본교 면접고사에 반드시 지참 바람
2. 입학전형 평가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3. 신입생은 학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과 동시에 휴학 할 수 없음
4. 본교 자체고사 결시자나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함
5. 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한 **제반서류의 허위 기재, 위조, 지원자격미달, 주요사항 누락** 등 입학전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6. 위 사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7.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취소 및 민·형사상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본교 및 타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입학이 취소된 자는 일정기간 동안 본교에 지원할 수 없음
8. 입학전형 결과 적절한 학력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수학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모집 인원 및 순위와 상관없이 입학사정회의의 결정에 따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9.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0. 이 밖에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팀(☎ 031-280-3851~6)으로 문의
11. 본교는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학교로서 모든 학생은 재학 중 「기독교 이해(2학점)」와 「채플(6학기)」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10 각종 양식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의 '지원동기' 등에는 출신고교, 본인 및 부모(친인척 포함)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 기재를 금지하며, 기재했을 경우에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이 감수해야 함.

지원학부

수험번호

성명

문항 1 강남대학교 지원동기

문항 2 학업계획

※ 자기소개서 서식은 원서접수 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직접 입력하여야 함.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서류심사 신청서

▶ 지원사항

지원사항	수험번호	학부(과,전공)

심사 확인란	심사위원	심사결과 특이사항
	(인)	
	(인)	
	(인)	

※ "심사 확인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지원자 인적사항

지원자 성명	한글		국적			주민등록번호	-								
	영문			출업일자	년	월	일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	-						
최종 출신고교				출업	□ /	예정	□	보호자/ 긴급 연락처	전화번호	1)		핸드폰	1)		
본인 전화번호				핸드폰					전화번호	2)		핸드폰	2)		
연락처	주소								연락처	주소	3)		핸드폰	3)	

※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 복수국적자는 보유국적을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앞자리에 생년월일, 뒷자리 7자리는 (남자)5999999 (여자)6999999으로 기재 (예, 여자 외국인일 경우 → (생년월일6자리)-6999999)

▶ 지원자격 구분 및 특이사항 : 해당란에 √표기바람.

지원유형	지원자격구분	특이사항
정원 외 2% 이내	<input type="checkbox"/> 영주교포의 자녀	※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월반, 휴학, 중복기간 등 특이사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해외근무자의 자녀	
	<input type="checkbox"/>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input type="checkbox"/> 기타 재외국민	
정원 제한 없음	<input type="checkbox"/> 외국에서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학력 조회 동의서

Official Agreement for Enrollment and Academic Credits

- School Name :
- School Address :
- School E-mail Address :

To whom it may concern :

I have applied to Kangnam University in Korea for 2021 academic year and agreed that this university could officially request my academic records from previously attended schools.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request your full cooperation to Kangnam University when they contact you regarding the verification of enrollment and transcripts.

Sincerely yours, (name)_____

(Signature)_____

- Student Name : _____
- Student ID Number : _____
- Date of Birth : ____ - ____ - ____ (mm-dd-yyyy)
- Date of Admission(transfer) : ____ - ____ - ____ (mm-dd-yyyy)
- Date of Graduation(withdrawal) : ____ - ____ - ____ (mm-dd-yyyy)

KANGNAM UNIVERSITY



Address: 40, Gangnam-ro,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Gugal-dong 111) Kangnam University (16979)
TEL: +82 31 280 3500 / FAX: +82 31 281 3604
Web Site : www.kangnam.ac.kr

사실증명 발급신청 위임장

(APPLICATION FOR ISSUANCE /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 색상이 어두운 란만 신청인이 작성합니다.(보호자 및 학생 본인 각각 1부씩 작성)
- 보호자, 학생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예: 여권사본)
-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 신청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 한합니다.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Receipt Date)	발급일 (Issue Dat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	-----------------------	---------------------	-----------------------------	---------------------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Alien Registration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v]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Exit (1) copy(ies)
-----------------------------	---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Exit)	부터(from)	까지(to)
--	----------	--------

※ 학력요건(3년 또는 12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입력

용도(Purpose) 대학입시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강남대학교 입학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전화번호 (Telephone no.) 031-280-3852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대학 입학 심사자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r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under Article 88 of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on 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 Applicant Name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
To the Chief of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